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인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90
----------	------

발의 연월일 : 2021. 6. 4.

발 의 의 원 : 홍인표 의원
김재우 의원
김규학 의원
이영애 의원
박우근 의원
윤기배 의원
이진련 의원
임태상 의원
황순자 의원

1. 제안이유

- 가. 「문화예술진흥조례」는 지역 문화예술 전반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조례로서 시대적, 정책적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 나. 지역 문화예술의 전반적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시민문화권 보장을 위한 사항을 강화함
- 다.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시 필요한 문화정책 사항을 추가하고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정한 문화예술공간 설치권장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문화사업의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다.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복지 증진(안 제5조~제6조)
- 라. 문화예술자료의 수집·관리 및 위원회(안 제7조~제13조)
- 마.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6조)
- 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의 설치 (안 제17조~제21조)
- 사. 지역문화예술인물 현창 등 (안 제22조~제24조)

3. 참고사항

가. 조 례 안 : [붙임 1]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2] 참조

다. 예산조치 : 담당부서 협의 필요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기본법」에 따라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통한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권리 신장을 위한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사업의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서예, 문학, 사진, 영화, 건축 관련 공연·전시회·기획·연구·창작활동 사업
2. 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의 문화향유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 사업
3.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원 및 문화학교 운영 사업
4. 청년 문화예술 진흥 사업
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사업
6. 시장이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축제 사업
7.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발굴·육성할 특색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2장 시민의 문화권 보장

제5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자유투자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표현과 활동을 하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계각층의 문화가 부당한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문화를 폭넓게 향유하도록 문화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복지의 증진) ① 시장은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의4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예술자료의 수집·관리·활용

제7조(문화예술자료의 수집·관리·활용) ①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의 자료를 수집·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자료의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축 대상, 범위,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2. 문화예술기관·단체, 주민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시민이 문화예술자료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자료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자료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자료 수집을 위해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자료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 및 자문한다.

1. 문화예술자료의 기증·취득·처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예술자료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문화예술자료 수집대상 및 의무사항) ① 문화예술자료 수집대상 기관·단체는 시 산하 문화시설과 시로부터 보조받는 사업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로부터 보조받는 사업기관·단체는 시의 보조를 받아 추진되는 문화예술행사의 관련 자료들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문화예술 행사 추진과정 등에서 생산·수집·보관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14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영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취소) 시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취소할 경우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따른다.

제16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공공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공연·전시의 기획에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참여시켜 기획할 수 있다.

제5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의 설치

제17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시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건축물이 복합된 경우 해당용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하고,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3. 판매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업무시설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7. 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제19조(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 2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군 지역 포함): 1,000분의 1
2.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중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000분의 5

제20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2. 그 밖에 미술작품 심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미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미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을 회의 시 마다 선정하여 소집하며, 선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미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시설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미술위원회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위원장 등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⑦ 그 밖에 미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① 시장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규칙이 정하는 기한까지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제20조의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를 규칙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건축주 및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시장에게 그 결과의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미술작품에 대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시장에게 이전 및 변경 심의 신청을 해야 하고, 시장은 제3항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지역문화예술인물 현창(顯彰)

제22조(지역문화예술인물 현창) 시장은 문화예술분야에서 대구를 빛낸 인물(이하 “지역문화예술인물”이라 한다)의 숭고한 업적과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인물 현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인물 선정, 연구조사, 교육 홍보
2. 지역문화예술인물 생가 등 인물과 밀접히 관련된 장소와 건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또는 기금 출연에 관한 의무 통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이전·변경 심의 신청 접수
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같은 영 제15조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영 제15조의2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4조 삭제 <2014. 1. 28.>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5.]

제8조 삭제 <2014. 1. 28.>

-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5.>
-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5.>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5.>
-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5.>
- [제목개정 2011. 5. 25.]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0조 삭제 <2013. 12. 30.>

-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①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문개정 2019. 11. 26.]

- 제12조(문화강좌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내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15조(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① 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圖書)나 문화예술 재화·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認證)하고,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 17.]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5. 25.>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 5. 25., 2014. 1. 28.>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19조 삭제 <2014. 1. 28.>